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(안)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 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는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명 띄어쓰기(안 제2조 별표1)

나. 본문중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“ 「 」 ”표기와 기타 상위법령 등의 개·폐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 별표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없음

다. 기 타 :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

(법제처기획예산담당관실 - 639(2004. 12.27)호)

4. 검토의견

○ 본 규칙 제정 규칙안은 법제처의 “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”에 의거 개별 자치법규 개정 때마다 일일이 띄어쓰기 및 법령 등 인용문의 낫표 표시사항을 개정안 말미에 부기토록 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구의회 규칙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와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 하려는 것이며, 우리구(의회) 각종 자치법규는 2005. 6. 22 공포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에 의거 개정된 바 있으므로, 원안과 같이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.